

안산시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|-----|
| 의안 | |
| 번호 | 315 |

제안년월일 : 1994. 12. 23

제안자 : 총무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산시에 거주하여 안산시 소재 중·고등학교에 다니는 우수학생들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명문학교를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나
- 개정안중 문화, 예술등 기능분야에 우수학생이 수혜대상자에서 삭제되어
- 예능, 체육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전국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자를 추가함.

2. 수정주요골자

- 안제12조(장학생의 자격)의 제3항을 추가(신설)함.
- 3. "영재및 특기생 장학생은 예능, 체육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전국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자"를 추가(신설)함.

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제 12 조 (장학생의 자격) 제3항을 추가(신설)함.

3. 영재및 특기생 장학생은 예능.체육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전국

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자.

안산시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-|
| 제12조(장학생의 자격) ① 장학생은 안산시 판내에 주소를 둔 판내 학교 학생중 품행이 단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 | 제12조(장학생의 자격) _____ |
| 1. 판내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판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입학시험 성적이 각10/100이내인 자로 하며 다만, 가정이 빈곤하여 타의 지원 없이는 진학을 못하는 장래가 축망되는 학생은 입학시험 성적이 20/100 이내인 자로 한다. | 1. _____ |
| 2. 판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우수 대학교에 합격하여 지역의 명예를 빛낸자. | 2. _____ |
| | 3. 영재 및 특기생 장학생은 예능.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전국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외 명예를 드높인자. |